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

제 1조(총칙)

주식회사 포스코피에스테크(이하"매수인"이라 한다)와 계약자(이하"매도인"이라 한다)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약관, 특별약관, 사양서 및 설계도면, 입찰유의서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구성되며, 매도인도 매도인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및 변경시 서면계약서 (구두발주금지)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기술자료"를 계약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를 요구시 요구목적,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을 "기술자료 요구서[첨부2]"에 기재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매수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약관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매도인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의미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매도인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항 또는 나.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상대방의 정보·자료로서 매도인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③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인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매수인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들을 의미한다.

가. 매도인이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나. 매도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다. 매도인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라. 매도인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마. 매도인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④ 사양서 및 설계도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는 매도인은 즉시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지적, 통지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은 ④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수입품의 경우 매도인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는 한국어로 번역문을 첨부하고 번역문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 3조(납품)

- ① 매도인은 계약서상의 납기일, 납품시간을 준수하여 계약전량을 납품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고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검수에 합격하고 매수인에게 수령됨으로써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조기 납품의 경우 납기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며 15일 초과시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납품이 가능하다. 납품시간은 매수인 상주 근무자 근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납품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매도인의 납품시에는 공급사양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하되, 필요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할 경우,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첨부를 요구할 경우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인에게 납품시 "경영상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품목과 수량을 분할하여 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에는 분납 단위 별로 검수 수령한다.
- ⑤ 매도인은 납품지체가 예상되거나 지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재 사용부서 및 관련부서에 지체사유와 납품 가능일자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아 매수인의 조업, 정비업무에 영향을 주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 기준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의 조업·정비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납기가 도래하기 전 매수·매도인 간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⑥ 매도인은 납품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아래의 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1. 포스코피에스테크 구내 교통운행 기준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 가이드라인 (별첨)
 - 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규칙, 화학물질관리법 등 법에서 규정한 화물취급 및 하역안전 관련 수칙

제 4조(규격 및 품질)

- ① 모든 물품은 계약상에 명시된 시방서, 도면, 규격명세서 또는 견본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재 재활용 등 매수인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품이어야 한다.
- ② 매도인이 불합격, 하자 등 불량부품 납품 시에는 매수인은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구매되는 자재의 전산등록규격, 자재규격 또는 도면에 인용되거나 요구하는 사외규격중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제 5조(검수)

- ① 검수 요청시에는 계약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한 검수 의뢰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검수는 납품된 물품을 하나 하나 검사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량 검사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출 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일부 추출의 경우 납품명세서상에 표기된 품목단위를 하나의 Lot로 본다.

- ③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검사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④ 검수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판정을 하고 검수 불합격된 때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재납품을 요청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부를 추출하여 검수한 경우 1단위 이상이 불합격이면 동일 Lot 전체를 불합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매도인은 검수결과 불합격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 재제작할 의무를 지며 불합격 발생 후 30일 경과시까지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출 할 것을 1회에 한하여 최고하고, 최고 후 14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반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수인이 임의 처리할 수 있다. 단, 불합격품 처리방법을 별도로 약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기타 검수절차와 이에 따른 권리의무는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납품명세서의 검수방법을 적용한다.
- ⑦ 계약내용의 검수방법은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매도인과 별도의 합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
- ⑧ 매도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중간검사에 대해 실시일 7일전에 매수인의 구매 계약부서로 중간검사를 서면 신청하여야 하며, 불합격으로 인한 재요청 시에도 동일하다.
- ⑨ 매수인이 품질확인을 위해 이화학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자체시험을 하거나, 공급사 자체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의 시험능력이 부족한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 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사외시험 기관에 시험을 의뢰 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경우 매도인의 자체 시험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 ⑩ 자재규격 또는 제작도면이 없이 구매되는 물품중 구매규격에 의거 특정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전산등록규격에 기입된 재질의 해당규격을 기준으로 검수 및 판정한다.
- ⑪ 매도인은 납품된 물품이 구매내용과 동일 또는 상등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⑫ 매도인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의 검수에 합격하여 수령된 날로부터 1년간 품질, 규격 및 기타 모든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자의 보수, 대물충당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의 보수 또는 대물 충당을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하여 최초 납품과 같은 조건의 하자보증 책임을 진다. 다만, 매수인은 별도의 약정으로 위 품목 별 하자보증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 ⑬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한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은 전항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6조(포장 및 표지)

- ① 매도인은 납품하는 물품의 운송중 파손 또는 유실이 없도록 충분히 포장을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한 표지(자재식별표)를 달아야 한다.
 -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 2. 계약번호
 - 3. 포장단위별 일련번호, 아이템코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신청부서, 신청자 등

4. 총중량, 순중량 및 체적

5. 취급상 주의사항

- ② 표지(자재식별표)는 매수자의 인터넷구매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도자가 인쇄하여 부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물품과 수명을 같이할 지구성 있는 견고한 스티커용지(황색)에 인쇄한다.
- ③ 매도인은 모든 계약물품에 대하여 상당기간 저장하여도 품질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폐기시 총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매도인은 제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품의 성능저하 및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시효성자재에 대해서는 제조일, 저장유효기간을 필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⑤ 매도인의 계약 물품중 플라스틱 재질(철재에 PVC코팅 포함)로 입고된 포장용기는 사용후, 매수인의 요구 시 매도인이 전량회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제 7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매도인은 매수인의 서면 승인 없이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8조(특허 및 상호)

매도인은 관련법상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계약이행에 관련된 특허, 상표, 허가 기타 행정상 문제처리와 비용부담의 책임을 진다.

제 9 조(지적재산권)

- ① 계약물품이 기본적으로 매수인의 독창적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반영된 사양서, 설계도면 등에 근거하여 제작되는 것인 경우, 계약물품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단, 기술 등이 종래에 공지된 것이거나 처음부터 매도인 또는 제3자에 속한 권리에 대해서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전항의 계약물품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에 기초하여,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임직원이 개량을 한 경우, 매도인 또는 그 임직원은 그 개량된 기술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서 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③ 계약물품의 기술적 사항 등이 종래 공지된 것이거나, 매수인이 제공한 사양서나 설계도면과 무관하게 매도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인 경우에는, 위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조(대금지불)

매도인은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완료 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매수인의 검수절차에 합격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권리가 매수인에게 취득된 후가 아니면 대금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1조(대금지불의 특례)

매도인이 납품완료전이라도 거래상의 금융사정 기타 자체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매수인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납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을 한도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조(납품지체)

- ① 매도인이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서상의 납품일로부터 실제 납품일까지를 지체일수로 계산하여 그 결과는 공급사 평가에 반영한다.
- ② 매수인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 이행기간이 지체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한 경우
 2. 매도인이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매도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 ③ 제 ②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구에 의하여 상당기간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3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매수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도인의 물품제작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도인의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제 13조의 2(매도인의 재무상태 통지의무)

- ① 매도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 즉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기간 중 워크아웃 신청, 회생 또는 파산 절차 개시 신청 등을 검토하는 경우
 2. 매도인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매도인의 부채비율 등 재무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계약이행에 대한 장애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② 매도인은 전항의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그 통지 후 지체없이 매도인의 계약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추가담보 제공 기타 매도인의 계약이행에 대한 장애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여 매수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 동 증빙자료의 제출을 면제하여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의 3(매도인의 강제노동방지의무)

- ① 매도인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이하 'UFLPA') 을 포함한 강제 노동 방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매수인에게 일부라도 강제노동이 개입되어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원료, 반제품, 물품생산설비의 제조 등 전체 공급망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강제노동이 개입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납품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일부라도 채굴, 생산, 제조된 물품(원료, 반제품, 물품생산설비의 제조 등 전체 공급망 중 일부라도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UFLPA Entity List 및 기타 다른 국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법인의 생산제품을 매수인에게 납품하지 않는다.
- ② 국내외 국가기관, 공공기관(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을 포함한다) 또는 투자사 인권 관련 시민단체등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공급망 추적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의 자발적인 자가진단을 통해

매도인의 공급망 추적 조사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강제노동과 관련한 조사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본조 각 호에 의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정확성을 보증하며, 매도인의 협조의무는 아래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급하는 물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이 아니며,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일부라도 채굴, 생산, 제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UFLPA 및 기타 국가에 따른 Entity List 기업과 연관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공
 2. 강제노동방지의무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실사 협조
- ③ 매도인이 본 조 제1항,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에 사용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만약 매도인이 위반행위를 요청한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부정, 부당행위에 준하여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의 제재 조항에 규정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본 약관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본 조 제1항,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 한다.

제 13조의 4(매도인의 공급망 실사 협조의무)

- ① 매수인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 및 각 국의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본조 각 호에 의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정확성을 보증하며, 매도인의 협조의무는 아래 각 호를 포함한다.
1. 자가진단표 등 ESG 관련 자료 작성
 2. 공급망 내 ESG 관련 정보공개
 3. 현장 실사
- ② 매수인은 공급망 실사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매도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장실사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매수인은 공급망 실사 결과에 따라 매도인에게 적절한 기한을 두어 평가사항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과 성실히 협의하여 개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매수인은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부정, 부당행위에 준하여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급망 실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매도인이 매수인의 개선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지 않거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매수인의 개선 요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협의한 결과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 14조(자료의 제공 및 비밀보호)

- ① 매도인은 조립장치 또는 사용하거나 운용하는 특별한 기술 또는 주의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교습을 하고 사용, 운전, 보관, 수리법 등 주의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제공하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할 경우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첨부을 요구할 경우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② 매도인은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알거나 취득하게 된 매수인의 영업비밀을 매수인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매도인은 그 임직원, 하도급사 및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매수인의 영업비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 하도급사 및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매수인에 대한 영업비밀유지약정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④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로 전 제 2 항 내지 제 3 항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그로 인해 매수인이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본 계약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
 2. 제품의 설계방법, 사양,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 정보
 3. 기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 영업 또는 경영상의 정보
- ⑥ 매수인의 규격서, 도면 등과 이들의 복사물은 매수인의 소유물로 보며 매도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이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지)되었을 때
 2. 매수인의 의뢰로 매도인이 기술검토 또는 참고견적을 제시하였을 때
 3. 매도인이 납기, 규격 등으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4. 기타 매수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5조(계약변경)

- ①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조치 할 수 있다.
 1. 계약수량의 증감조절 및 삭제, 또는 유사품목추가, 단 그 시기는 제작 착수전 또는 계약기간 종료 전이어야 한다.
 2. 계약규격, 품질의 변경 또는 설계변경
 3. 매수인이 요구한 계약사양으로 납품된 목적물이 사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능향상을 위한 After Service가 필요한 경우
- ② 계약 체결 후, 매수인과 매도인의 사양협의 결과에 따라 사양변경이 발생하여 가격, 납기 등의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은 사양변경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약의 변경절차를 거치며, 매도인이 계약의 변경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양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③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대금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품 명세서 또는 설계서의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증감조절하며, 이를 기준하기 곤란하거나 신단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④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현저한 품질향상이나 수명연장을 하고,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⑤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후라도 본 계약금액 산출내역 중 적용물량, 단가 및 제비용이 일반 시중의 거래시세 또는 매수인의 표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발견된 경우 또는 계약체결 60일후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시점 기준가격 대비 총 계약금액의 5/100 증감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공급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공요금, 운임 등)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상기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매도인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조(사급자재)

① 물품의 제조 가공에 있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매수인이 자재를 사급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지정장소에서 인도하고 매도인은 인수 후에 운반과 보관 책임을 지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대물충당 또는 공정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은 임의로 지정장소 외로 이동 또는 유용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언제든지 현품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자재에 대하여는 납품시에 매도인은 자재사용 명세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고 잔여품은(기사용잔량과 사용 잔재)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6조의2 (매도인의 수리대상 자재 관리의무)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리를 위해 반출한 자재(이하 "수리대상 자재")를 점유하는 동안 해당 자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파손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수리대상 자재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리대상 자재에 수반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대상 자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수리대상 자재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 1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된 때

2. 매수인, 매도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상호 인정한 때

3. 매도인이 납품 기한내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또는 완료하지 못하거나, 매도인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매도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매도인이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때
- 매도인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 3자에 의한 강제집행, 재무상황악화 (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 워크아웃 신청, 회생 또는 파산 절차 개시 신청 등을 하거나 매도인에 대한 지급정지, 강제집행 개시, 영업정지, 회생 또는 파산 절차 개시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제한된다고 인정되는 때

4. 별도의 거래정지 Process 약정 및 이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Sourcing Group별 계약 및 주문 중단)

5. 기타 매수인에게 부득이한 형편이 발생하여 매도인이 인정한 때.

다만, 제 1,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환급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매도인이 고의로 거래 또는 계약 조건에 위반한 이행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고의에 의한 약정 품질 미달 자재 공급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이하 "고의의 부당이윤취득행위 등"라 함)을 하고, 동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 또는 매수인에게 끼친 손해의 누계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경우에 매수인은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서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란 고의의 부당이윤취득행위등과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하고, 동시에 매수인의 계약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 ④ 매도인이 고의의 부당이윤취득행위 등을 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매수인에게 끼친 손해누계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18조(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

- ①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첨부1]과 같다.
- ② [첨부1]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를 한 공급사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불이행 공급사는 해당 소싱그룹을, 부정당 행위 공급사는 모든 소싱그룹의 입찰 대상 공급사로서의 자격을 제재 기간 동안 취소하며, 금품제공 등 비윤리 행위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 매수인 회사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동 공급사가 제재 기간 종료 후 종전에 등록되어 있던 소싱그룹에 대해 재등록 요청 시에는 공급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공급사 평가기준에 의거 합격 시 해당 소싱그룹에 등록 할 수 있으며, 제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재 기간 종료 후 종전에 등록되어 있던 소싱그룹에 대해 재등록 요청 시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소싱그룹에 재 등록 할 수 있다.

단, 제재 기간 중 '공급사 행동규범'을 위반하거나,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등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급사 재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전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행위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른 제재대상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해당 매도인과 사실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1. 본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회사·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 및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단체의 구성원(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조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법인·기타 단체
3. 본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회사·법인 기타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법인·기타 단체
- ⑤ 매수인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스코피에스테크그룹사와 상호 교환할 수 있으며, 매도인(대표자 포함)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⑦ 매도인이 제2항의 기준에 의한 계약불이행 및 부당행위를 한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매도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매도인이 시정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첨부1]에서 정하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공급사 제재심의 위원회는 계약불이행 및 부당행위 공급사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는 경우 제재기간을 그 위반 행위의 동기, 고의성 여부 및 해당 공급사의 당사에 대한 기여도, 해당 품목의 조달Risk를 고려하여 [첨부1]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 및 부당행위로 제재를 받은 공급사에게 제재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 기간을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단, 제재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⑨ 부당당 공급사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첨부1]의 사유 중 2개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재 기준에 의한다.
- ⑩ 설비/자재 구매부문 제재인 경우라도 他부문이 설비/자재 소싱그룹을 준용하여 입찰 시에는 해당 공급사에 대한 동일한 제재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또한 물품 특성상 설비/자재 유사, 동종 소싱그룹인 경우에는 설비/자재 중 한 소싱그룹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되면 유사, 동종 소싱그룹 전체에 대해 동일한 제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⑪ 매도인이 포스코피에스테크그룹사에서 제2항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매수인의 공급사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 ⑫ 포스코피에스테크그룹사에서 윤리특별약관 및 관련약관에서 규정한 비윤리행위, 부당행위 혹은 공급사 성과분석결과로 인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공급사의 경우 공급사 평가시 반영한다.
- ⑬ 통합소싱그룹 공급사가 통합구매 참여 그룹사에서 계약불이행 혹은 공급사 성과분석 결과로 인해 해당 소싱그룹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통합구매조직에서 수행하는 해당 소싱그룹의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 ⑭ 매도인이 계약체결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⑭ 매도인의 담합으로 인하여 매수인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사실 확정 이후에 실시한다.
 1. 손해배상 금액은 각 호에 의거하여 배상토록 한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매수인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전 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배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전 1,2항의 배상액은 매수인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할 계약 금액 및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 ⑮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라 손해배상 및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정위 조사 개시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제재와 손해배상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제재를 감경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50% 감경한다.
 2. 공정위 조사 개시후 1순위 자진신고자는 제재를 감경하고, 손해배상은 면제토록 한다. 2순위 자진신고자는 제재를 감경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50% 감경한다.

제 19조(계약해제의 효력)

계약해제권의 행사 또는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기성부분(제조가공 계약의 경우)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수인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다
2. 중간불로 매수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한 기납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은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매도인의 대금 반환 책임을 면제하고 그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제 20조(감액 및 증액)

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후라도 본 계약금액 산출내역 중 적용물량, 단가 및 제비용이 일반 시중의 거래시세 또는 매수인의 표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매수인, 매도인이 협의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 할 수 있다.

다만, 회전체의 BALANCING 검사시 수정 가능품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별도 합의 없이 수정작업 후 BALANCING 수정 작업비용 에 대해 감가 적용한다.

② 매수인이 요구한 물품 대비 품질이 열위 할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제품의 재료, 원료의 함량이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 제품의 물리적 성능이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 제품의 가공 및 인쇄물의 상태가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③ 제1,2항의 감액 및 감가 해당액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할 채무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수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과 합의한 기일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1조(상계)

- ①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지체상금, 손해 배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적 채무를 매도인에게 지불할 계약 금액 및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 ② 공제할 수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환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상사이율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22조(소송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관할 법원은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여 지정한다.

제 23조(관련법규의 준수)

- ① 매도인은 환경관련 법규상 공해배출 허가를 요하는 제조시설 보유시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중 동 법규에 저촉행위 발생시 매수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② 매도인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서 명시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매수인은 매도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나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조정 협의 및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이유로 거래단절 및 불합리한 제재조치 등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보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4조(안전책임)

매도인은 납품하는 물품의 운반 및 이의 준비 등 최종 인계시점까지의 제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의 소홀로 야기된 매수인의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25조(계약만료)

- ① 단가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 1.계약기간의 만료
 - 2.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 ② 단가계약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발주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단가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 26조(공급사 등록 자격 변동)

Sourcing Group에 등록된 공급사는 등록 이후 보유설비 및 기술능력 등 등록 자격의 변동이 발생시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싱그룹에 등록된 공급사의 설비 및 제작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 소싱그룹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소싱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27조(윤리규범 준수)

매수인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윤리규범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8. 1 부터 제정 시행한다.

[첨부 1]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시 제재 기준

구분	심사항목	제재기간
계약불이행	○ 낙찰 후 사양확인 등의 과실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고의성 없는 단순 오투찰 : 1회 경고, - 1년내 2회이상 발생시 고의성으로 간주하여 제재	1년 이내
	○ 계약자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정상적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년 이내
	○ 불합격품 또는 하자품에 대한 대체납품 요구에 불응하거나, 30일 이상 지체건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 계약체결 후 주요부품의 수급 곤란 등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이내
	○ 계약의 이행 또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POSCO 사업장 내에서 재해를 발생 시킨 자 - 아래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일반(치료기간 4일 이상)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경미(치료기간 4일 미만)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1년 이내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 매수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당초 계약내용에 의한 자재규격서, 도면 등과 상이하게 물품을 제작하여 설비사고를 유발한 경우	1년 이내
	○ 기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
부정당행위	○ 계약을 이행에 있어 고의적으로 부당, 부정 행위를 한 경우 - 고의적으로 품질이 낮은 자재를 납품하거나 - 납품 수량을 속여 납품하거나, 중고품 또는 제조 Maker를 속여 납품 - 입찰 또는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3년 이내
	○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자산을 무단반출한 경우	5년 이내
	○ 악의성 투서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ESG 구매 정책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 경우나 사회 통념상 거래 유지가 어려운 경우(영구)	5년 이내
	○ 부당하도급을 한 경우 (물품구매는 제재대상 제외) - 부당 하도급 1회 위반 (전부 또는 주요부문 하도급) - 부당 하도급 2회 위반 (전부 또는 주요부문 하도급)	1년 이내 2년 이내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경우 - 입찰 담합에 단순 가담한 경우	5년 이내
	○ 계약 체결에 부당하게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하거나, 타인에게 상호를 빌려줘 계약 체결한 경우	1년 이내
	○ 매수인의 입찰,협상,검수등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계약이행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1년 이내
	○ 부정당공급사로 부터 물품을 구매,납품하여 시정권고를 받은후 시정권고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1년 이내
	○ 비윤리행위(윤리특별약관 제5조)시 - 1백만원 이상의 금전,금품을 제공한 경우 - 1백만원 미만의 금전,금품을 제공한 경우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편의를 제공한 경우	5년 3년 1년
	○ 계약의 체결, 이행 등과 관련한 '공급사 행동규범' 위반으로 중대한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 경우 : 2년	2년 이내
	○ 청탁을 통해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 - 부적정 거래 성사시 : 입찰참가제한 - 부적정 거래 미성사시 : 입찰참가제한 (클린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년 이내

기술자료 요구서

1. 매수인과 매도인							
매수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매도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기술자료 내역		요구하는 기술정보·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기재(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2) 요구 목적		매수인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해당 사항 체크 또는 직접기재) ※ 직접기재시 증빙자료 필히 첨부					
<input type="checkbox"/> 구입사양의 확정, 입찰참여자의 자격 및 범위의 확정 등 계약 체결 전 사전조사를 위해 필요 <input type="checkbox"/> 공동 특허 개발 과정에서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 <input type="checkbox"/> 공동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 <input type="checkbox"/> 제품하자와 직접 관련되어 원인규명을 위해 필요 <input type="checkbox"/> 생산직결 핵심설비에 해당되어 하자·사고 발생시 긴급 수리·복구목적으로 필요 <input type="checkbox"/> EPC 계약 목적물의 정합성 검사를 위해 필요 <input type="checkbox"/>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공서 등 제출에 필요 (※ 구체적인 해당 법령 조항 기재) <input type="checkbox"/> 직접 기재 :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i)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ii)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4) 권리 귀속 관계	(i) 매수인이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ii)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체결 여부, (iii)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iv)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5) 대 가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
7)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당해 기술자료의 사용기간을 기재
8) 반환 및 폐기 방법/일시	당해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 반환일 또는 폐기일
9) 그 밖의 사항	기술자료 임차계약 체결 여부, 기술자료 요구시 매수인 매도인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